31 병원 근로자에서 발생한 갑상선암

 성별
 나이
 36세
 직종
 병원
 업무관련성
 낮음

1 개 요

근로자 K는 2001년부터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근무하며 방사선 유도 영상투 시장치를 이용한 비디오 연하조영검사를 하였으며, 2009년 8월 갑상선암으로 확진되었다.

2 작업내용 및 환경

근로자 K는 2001년부터 4년간 재활의학과 전공의 생활을 했으며, 2005년 3월부터 발병 시까지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비디오 투시 연하 조영검사와 C-arm을 이용한 근무 시 방사선에 노출되었다. 선량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과거 방사선 기록은 없었다. K의 작업환경과 업무량, 선량실측 및 세부 작업내용 등을 현장 조사하여 실측과 몬테카를로 모사방법을 이용하여 K의 선량을 재구성하였다. 재구성된 K의 연간 추정선량은 갑상선 최대선량값이 4.5~55.4mSv였다. 노출을 최대로 추정할 수 있는 보수적인 값이며, 실제로 의뢰인은 시술시 납 차폐복을 착용하게 되는데 납 차폐복을 착용할 경우 선량이최소한 90%이상 감소하게 되지만 이 선량 재구성에서는 이러한 차폐복의 착용도 고려하지 않았다.

3 의학적 소견

의뢰인 K는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, 가족 중에 암에 이환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. 업무 중 방사선 노출이외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방사선 노출은 없었으며, 그 외에 발암 요인에 노출된 이력도 없었다. 특별한 이상이 없다가 2009년 8월 6일 갑상선 유두성 암 의심 소견을 받았으며, 8월 28일 갑상선암으로 확진되 었다. 갑상선암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이 있다. K는 병원에 근무 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된 이력이 있고 입사 이후 방사선 노출작업 후 상기 질 병의 발생까지 잠재기간인 최소 3년이 경과하였다. 하지만, 연간 선량을 추정 한 후 보호구 착용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전신과 갑상선에 대한 인과확 률평가를 수행하면, 타 근무자와 같은 조건으로 전신 평균선량값을 이용한 경우 인과확률의 추정치는 1.44%이었으며 95%, 99% 신뢰상하은 각각 6.94%, 11.73%로 계산되었고, 갑상선 최대선량값을 적용한 인과확률의 추정치는 5.19%이었으며 95%, 99% 신뢰상한은 각각 21.88%, 33.30%로 평가되었다. 이 신뢰상한의 50%를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일반적 평가 기준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 기 어렵다. 또한 갑상선암은 우연종으로 발견되는 매우 흔한 암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. 따라서 의뢰인의 갑상선암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.

4 결 론

근로자 K는 갑상선암(유두성 종양)으로 확진되었는데,

- ① 원인으로 잘 알려진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, 잠재기간을 경과하였으나
- ② 인과확률 평가 결과 95%, 99% 신뢰상한은 각각 21.88%, 33.30%으로 낮게 평가되어,

현재의 결과만을 가지고 작업관련성을 판단할 때, 작업 중 노출된 방사선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

64 ▮ 산업안전보건연구원